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인비행장치 사고 시 조종자의 의무 신설〉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6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2217062)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무인비행장치 사고 시 조종자의 의무 신설 등(안 제125조제5항 등)	2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221706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무인비행장치 사고 시 조종자의 의무 신설 등(안 제125조제5항 등)

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안 제129조), 이를 위반한 경우 조종자 증명의 취소(안 제125조), 벌금·과태료 규정(안 제161조 및 제166조)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④ (생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 ----- ----- ----- ----- -----, 제3호의3, 제4호의2, ----- -----.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⑥ (생략) <신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④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⑥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 ----- -----.

현행	개정안
1.·2.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u>무인비행장치로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재난대응,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추락·충돌과 같은 드론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사고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건에서 2025년 37건으로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무인비행장치 사고 신고 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계		0	1	4	25	37	67
종량	1종(MTOW 25kg 초과~자중 150kg)	0	1	4	23	35	63
	2종(MTOW 7kg 초과~25kg 이하)	0	0	0	0	0	0
	3종(MTOW 2kg 초과~7kg 이하)	0	0	0	2	0	2
	4종(MTOW 250g 초과~2kg 이하)	0	0	0	0	2	2
기종	무인멀티콥터	0	1	4	23	35	63
	무인헬리콥터	0	0	0	0	0	0
	무인비행기	0	0	0	2	0	2
	무인수직이착륙기	0	0	0	0	2	2
	무인비행선	0	0	0	0	0	0

주체	비사업용(개인)	0	0	1	4	6	11
	사업용(기업)	0	1	2	6	12	21
	공공기관	0	0	1	15	19	35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드론 사고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의무가 미비하여 드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등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¹⁾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 미이행시 조종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조종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무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무인비행장치 이용 전반의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129조제7항)	위반 시 제재조치
<u>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u> 각 호의 조치 필요	(조종자 증명 취소)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u>사람을 사상한 후</u>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조종자

한편, 개정안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 2, 제4호, 제4호의 2, 제7호, 제8호, 제8호의 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소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한정하여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는 피해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의무로서 조종자 책임 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외에도 동력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29조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129조가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²⁾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

초 경 량 비 행 장 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고 체중을 이동하여 방향을 조종하는 비행장치로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고 좌석수가 1개인 것
	회전익비행장치			로터블레이드(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 비행장치로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고 좌석수가 1개인 것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기구류	유인자유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장치
		유인계류식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지상에 결박되어 있으며,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장치
		무인자유기구		<u>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비행장치</u>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로서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		
		무인비행선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또는 합금소재 뼈대에 천을 입혀서 만든 사람이 아래 매달려 활공할 수 있는 비행장치

※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조종자 증명의 자격취소와 관련하여 안 제125조제5항제4호의 2는 “사람을 사상한 후”로만 한정하여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경우는 자격증명 취소·정지 사유에서 누락되어 안 제125조의 제재대상이 제129조제7항의 의무 범위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129조제7항)	위반 시 제재조치
<u>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u> 각 호의 조치 필요	(안 제125조, 조종자 증명 취소)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u>사람을 사상한 후</u>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16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안 제166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조종자

이에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125조 제재대상을 제129조제7항의 의무범위와 일치시키고 의무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재의 비례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25조 및 제161조는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는 문언은 제129조제7항제1호(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을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위법행위의 경중 및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처벌수준을 과태료 30만원에서 벌금 2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0